

# 2022학년도 신학기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요약

## (2022. 02. 07 / 교육부 발표)

### 1. 안전한 학교를 위한 방역 강화

- a. KF 80이상 마스크 착용
- b. **자가진단(오렌지 패스) 제출 후 등교(출근)**
- c. 학생 백신접종 및 교직원 3차 접종 권고
- d. 체온계, 마스크, 소독 용품, 위생장갑, 신속항원검사 키트 등 학교방역에 필요한 용품 사전 비치
- e. (거리두기 및 환기) 교내 최소한의 거리두기(개인별 2m 이상) 유지, 상시 환기(기상상황 고려 상시 환기 불가 시 쉬는 시간 마다 환기)
- f. (취약시설 관리) 급식시설, 체육관 등 관리기준
  - i. (급식실) 칸막이 설치, 지정좌석제 운영, 식사 시 모든 창문 상시개방, 유힬공간 활용(교실, 특별실 등), 교실배식 병행, 시차배식 등 실시
  - ii. (체육관) 동일 수업시간 2개 학급 초과 수업 지양, 수업 시 모든 창문 및 출입문 개방 조치, 수업 중 마스크 상시 착용

### 2. 등교(출근)기준 변경

- a. (동거인 중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) 동거가족 중 재택치료자(확진자)가 있는 경우 등교중지 단, \*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,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 가능 (두경우 모두 통보 당일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)

구분	재택치료자(확진자)	밀접접촉자
등교여부	등교중지 (단, 접종 완료자 등교가능)	등교가능

\*접종완료자 (백신 2차 접종후 14일 이후 90이내 및 3차백신 접종자)

- b. (감염 확진자)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※ 확진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은 백신접종여부 관계없이 7일
- c. (방역당국이 통보한 밀접접촉자) 학생 및 교직원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 받았을 경우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동감시 또는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

### 3.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

- a. (확진자 발생시 학교 자체조사)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체계 전환에 맞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자체조사(접촉자 분류) 실시
- b.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기준
  - i.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/생활하는 구성원 (수업교실, 사무실등)
  - ii.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(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)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
    - 1. 확진자와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
    - 2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
    - 3. 통학버스 운영시에는 확진자 근거리 좌석(앞,뒤,좌,우)에 동승 했을 경우
- c. (학교 자체조사 접촉자 후속조치) 학교 자체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서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진단검사 실시

- i. *(유증상자, 고위험 기저질환자) 학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 실시*
- ii. *(무증상자)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서 '음성'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교, '양성'인 경우 PCR 검사 실시*
- iii. 학교자체 접촉자 후속조치

대상	검사방식	검사장소	등교제한
유증상자	PCR 1회	선별진료소	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
무증상자	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(2일 간격)	가정,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	

- iv. *신속항원검사는 자가,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에서 실시 /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*
- v. *등교 시 음성결과 확인(가정 : 보호자 확인서, 선별진료소·의료기관 : '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)*  
 ※ 접촉자가 아닌 학생, 교직원에 대해서도 필요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능(1회)
- d. (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)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%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교육(지원)청에 비치 후 유사(필요) 시 활용

#### 4. 학사 운영 (4개 유형, 학교장이 판단)

- a. 학교의 학사운영 유형은 ① 정상교육활동, ② 전체등교+교육활동 제한, ③ 일부등교+일부원격수업, ④ 전면 원격수업 등으로 시행
- b. 학사운영 유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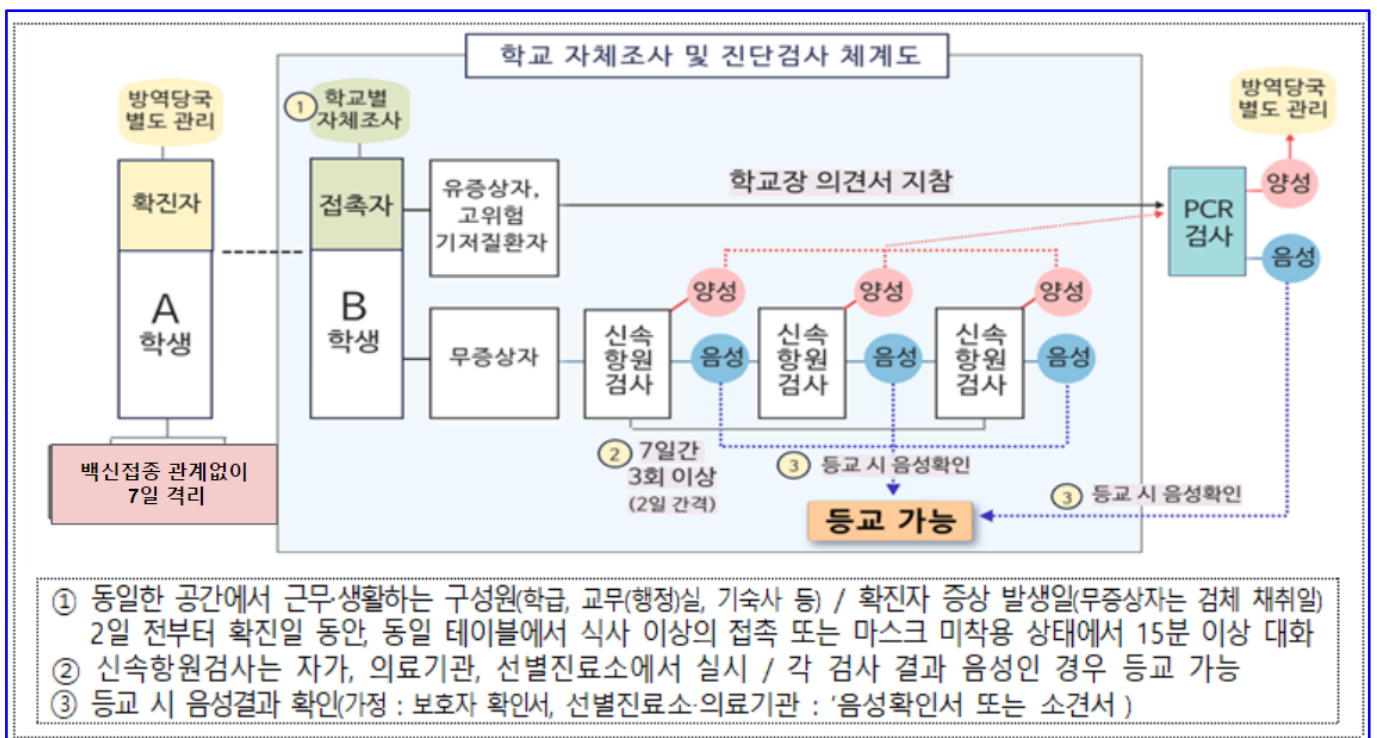
유형		내용
①	정상교육활동	전 학생이 등교, 모든 교육활동을 실시
②	전체등교+교육활동 제한	전 학생이 등교, 교육활동(교과/비교과) 제한
③	일부등교 + 일부원격수업	“밀집도 조정” 등을 통해 일부학생은 등교하고, 일부학생은 원격 수업 실시
④	전면 원격수업	전 학생들에 대해 원격 수업 실시

※ 유, 초1·2, 특수학교(급), 돌봄, 소규모·농산어촌학교 등은 원칙적으로 매일등교

- c. 학교단위 전면 원격수업 전환 기준은 업무연속성계획 - BCP(Business Continuity Plan) 수립시 사전에 결정하여 포함
- d. 교육지원청 및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 전환은 전국적인 감염 및 등교상황, 위험도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부·시도교육청·방역당국간 협의를 통해 조정
- e. (지표) ① ‘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%’ 또는 ② ‘학내 재학생 등교중지(확진+격리) 비율 15%’를 토대로 학사운영 유형 결정

※ 확진율은 최소 학교 단위 관리, 등교중지율은 학급·학년 단위 적용 가능

※ 적용예시 : 두 지표 중 한 기준 초과시 유형②, 두 기준 초과시 유형③ 전환



※ 위의 방역지침은 질병관리청(KDCA), 교육부(MOE)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시로 변경 될수  
있음.